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5. 4. 15.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4월 6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4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111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2005. 4. 1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최 두 열

가. 제안이유

2005. 1. 15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에 통합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조정 등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으로 통합 정비함.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 주차대수 20대 이상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안 제8조의2)

○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8조의3)

○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함.(안 제9조)

○ 재산세 과세대상 변경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이 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1조)

○ 재산세의 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세율을 변경함.
(안 제20조, 안 제23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조문을 신설함.(안 제29조)

○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조문 신설에 따른 시행규칙의 조를 변경함.(안 제3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 과세 하도록 2005.1.15일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에 통합하고, 주차 전용건축물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율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현행조례에 규정된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으로 통합 정비하고자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종합토지세를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안 제10조 내지 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및 안 제24조에서와 같이 종합토지세 단어는 삭제하고 재산세로 자구를 정비·개정하였음.

○ 안 제8조의2와 안 제8조의3을 신설하여 주차대수 20대 이상 주차전용건축물과 주차대수 20대 이상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건설,매입)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감면범위를 확대하였고, 현행조례 제9조에는 건설임대 및 매입임대를 같은 조문에 규정하였으나 동 개정 조례안에서는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안 제9조제1항에,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안 제9조제2항에 구분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29조에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규정을 신설하였음.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2005.1.15일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에 통합하고, 주차전용건축물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규정과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건축,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는 등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 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2005.1.15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에 통합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조정 등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 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으로 통합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 나. 주차대수 20대 이상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8조의2)
- 다.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8조의3)
- 라.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함.(안 제9조)
- 마. 재산세 과세대상 변경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이 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1조)
- 바. 재산세의 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세율을 변경함.(안 제20조, 안 제23조)
- 사.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조문을 신설함.(안 제29조)

아.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조문 신설에 따른 시행규칙의 조를 변경함.
(안 제30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개정근거

- (1) 지방세법개정(2005. 1. 5 법률 제7332호)
- (2) 지방세법시행령개정(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또는 승인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심사대상이 아님.

마. 기 타

- (1) 입법예고 : 2005. 3. 16 ~ 2005. 3. 31(특이사항 없음)
-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3)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5. 4. 4)
-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해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4조후단에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건축물로서”를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8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8조의3(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

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 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연도 6월 1일부터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times 365 / \text{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0조제1항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1조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를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하고, “건축물”을 “주택”으로 한다.

제13조후단에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4조제목“(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며, 본문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을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을 “시장정비사업시행용”으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을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한다.

제15조본문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7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20조중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한다.

제23조후단에 “1,000분의 3으로 하고,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를 “1,000분의 1.5로 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호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25조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29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u>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u>재산세</u>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u>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u>재산세</u>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u>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략)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u>재산세</u> 1. ~ 7. (현행과 같음)
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u>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u>건축물로서</u>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의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u>재산세</u> 1. (현행과 같음) 2. <u>건축물 및 주택으로서</u>

현행	개정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제8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u>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신설>	②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제8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u>재산세</u> 제8조의2(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 <u>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u>

현행	개정
<u><신설></u>	<u>제8조의3(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u> <u>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u>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u> <u>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u> <u>부대 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u> <u>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u> <u>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u> <u>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u> <u>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u> <u>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u> <u>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u> <u>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u> <u>부동산 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u> <u>에 의하여 계산한다.</u> <u>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u> <u>급하여 1년간(직전연도 6월 1일부터</u> <u>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u> <u>으로 한다.</u> <u>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u> <u>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u> <u>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u> <u>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u> <u>로 한다.</u> <u>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u> <u>액 × 365 / 영업기간(일수)</u> <u>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u> <u>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u> <u>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u> <u>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u> <u>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u> <u>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u> <u>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시가표준액</u> <u>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u> <u>한다.</u>

현행	개정
<u>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 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정한다.</u> <u>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u>	<u>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 무기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u> <u>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u>

현행	개정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
제1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u>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u>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의 100분의 50</u>을 경감하고, <u>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u>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u>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u> 2. <u>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3. <u>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u> 제1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u>재산세</u> ②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illegible]

현행	개정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u>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u>	 <u>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u>
제16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 를 면제하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6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u>재산세</u>
제17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u>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제17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u>재산세</u>
제18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u>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18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u>재산세</u>
제19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	제19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	개정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u>재산세 및 종합토지세</u>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u>재산세 및 종합토지세</u>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2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u>1,000분의 3</u>를 적용한다. 제21조(벤처기업육성특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특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를 면제한다. 제23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2조의2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u>재</u>	 <u>재산세</u> <u>재산세</u>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2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u>1,000분의 1.5</u> 제21조(벤처기업육성특진지구에 대한 감면) <u>재산세</u> 제23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u>재</u>

